

# 진료비감면규정

제정 1999. 6. 17.  
개정 2000. 8. 25.  
개정 2006. 4. 3.  
개정 2007. 4. 6.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3. 18.  
개정 2018. 1. 8.  
개정 2023. 1. 3.  
개정 2023. 3. 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직원에게 진료수가 감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3)

제2조(적용범위)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이사, 감사, 전공의, 파견근로자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진료수가 감면) 진료수가를 감면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면제대상

- 가. 의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진료를 받은 자
- 나. 의료원 직원으로서 업무상 공상환자
- 다. 중요 행사에 의료반을 파견하여 일반검사 및 투약을 한 경우

## 2. 감면대상

가. 의료원 직원(이사, 감사, 전공의, 파견근로자 포함) 및 직원의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부모가 기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 한다.

- 1) 외래, 입원 : 총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 2) 삭제 (개정 2023. 3. 7)
- 3) 삭제 (개정 2013. 2. 22)
- 4) 종합건강진단, 치과 진료비 중 비급여는 진료비의 30%를 감면한다.

(개정 2013. 2. 22)(개정 2018. 1. 8.)(개정 2023. 1. 3.)(개정 2023. 3. 7)

- 5) 의료원은 장례식장 이용시 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20%를 감면한다.

나. 삭제 (개정 2006. 4. 3)

다. 기타 이외의 진료수가에 대하여 직원에게 감면 또는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4. 3)

제4조(감면대상자 확인 및 통보) 원무과장은 제3조의 감면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총무과장은 진료수가 감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상자 명부를 원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상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4. 6) (개정 2013. 3.18)

제5조(보고) 원무과장은 진료비 감면 실적을 매월(입원, 외래)말 기준 익월 10일 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6) (개정 2013. 3.18)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대상) 이사, 감사, 전공의, 파견근로자의 감면대상 범위는 본인 및 직계가 족에 한한다.

### 부 칙(개정 2006.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07. 4.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3.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18.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개정 2023.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